

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·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,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
제5조제6항제3호 중 “인정되는”을 “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”으로, “기간”을 “기간(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·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)”으로 한다.

제14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·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,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
제14조의2제3호 중 “인정되는”을 “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”으로, “기간”을 “기간(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·

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그 소송이나 조사·검사 등의
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
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
그 소송이나 조사·검사 등의
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

4. (생략)

----- 금융위원회가 인정
하여 심사를 중단한 -----

----- 기간(금융
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
이나 조사·검사 등의 절차가
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
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)

4. (현행과 같음)